##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병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904

발의연월일: 2021. 6. 21.

발 의 자:이병훈·오영환·한준호

노웅래·전재수·김철민

임오경 · 유정주 · 민형배

서영교 · 송갑석 · 어기구

김병욱 • 양향자 • 박 정

고영인 의원(16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광주광역시에서 해체 중인 5층 건축물이 붕괴되면서 인근 버스정류소에 정차한 버스를 덮쳐 버스기사와 승객 등 총 17명이 사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고, 2019년 서울특별시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었음.

이번 참사와 같은 사고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해체현장의 부실관리와 미흡한 안전조치 등 해체작업자와 해체감리자의 안전불감증에 있다고 진단되고 있지만, 사고의 피해자들이 이들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수 있는 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.

이에 해체공사의 관리자, 해체작업자 또는 해체공사감리자가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, 특히 해체계획서 위반 또는 감리업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

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신설함으로써, 건축물 해체 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 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55조 신설). 법률 제 호

##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5조(손해배상 책임) ① 해체공사의 관리자, 해체작업자 또는 해체 공사감리자가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 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. 다만, 해체공 사의 관리자, 해체작업자 또는 해체공사감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② 해체공사의 관리자 또는 해체작업자가 제30조제2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에 맞게 공사하지 아니하거나 해체공사감리자가 제32조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. 다만, 해체공사의 관리자, 해체작업자 또는 해체공사감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1.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
- 2.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

- 3. 위반행위로 인하여 해체공사의 관리자, 해체작업자 또는 해체공사감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
- 4. 위반행위의 기간·횟수 등
- 5. 해체공사의 관리자, 해체작업자 또는 해체공사감리자의 재산상태
- 6. 해체공사의 관리자, 해체작업자 또는 해체공사감리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적용례) 제5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55조(손해배상 책임) ① 해체공
	사의 관리자, 해체작업자 또는
	해체공사감리자가 이 법을 위
	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
	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
	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
	진다. 다만, 해체공사의 관리자,
	해체작업자 또는 해체공사감리
	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
	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
	<u>니하다.</u>
	② 해체공사의 관리자 또는 해
	체작업자가 제30조제2항에 따
	른 해체계획서에 맞게 공사하
	지 아니하거나 해체공사감리자
	가 제32조제1항을 위반함으로
	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
	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
	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
	에서 배상책임을 진다. 다만,
	해체공사의 관리자, 해체작업자
	또는 해체공사감리자가 고의
	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

-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
  를 인식한 정도
- 2.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
- 3. 위반행위로 인하여 해체공사 의 관리자, 해체작업자 또는 해체공사감리자가 취득한 경 제적 이익
- 4. 위반행위의 기간·횟수 등
- 5. 해체공사의 관리자, 해체작 업자 또는 해체공사감리자의 재산상태
- 6. 해체공사의 관리자, 해체작 업자 또는 해체공사감리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